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 협회 조사부

미국

FTC, 허위의 체중감량제 광고에 대처 제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2월 5일 체중감량제를 광고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사건을 접수시켰다. FTC는 텍사스에 위치한 Mark Nutritionals사와 그 임원인 Harry Siskind와 Edward G. D'Alessandro, Jr.를 실증되지 않은 허위의 광고를 한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FTC에 따르면, 이들은 체중감량제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650개 이상의 라디오방송국 방송진행자들과 110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더라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FTC는 지난 11월 19일 “체중감량광고에 관한 보고서 : 트렌드 분석”을 발간하고, 공공보건에 관한 기만적인 광고의 영향과

체중감량제에 관한 오인유발적 주장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한 아래, 최초로 이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FTC 소비자보호국장인 J. Howard Beales 3세는 말했다.

1999년 이후 상기 협의자들은 1억 9천만 달러가 넘게 이 제품을 판매해 왔다. FTC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허위의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품은 액체로 되어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한 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주로 수신자부담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 제품을 월마트 등 대형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실제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고는 20~40 파운드의 체중감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소비자들이 고칼로리가 함유된 음식을 먹어도

체중감량이 된다고 한 점, 그리고 장기간이나 영구적으로 체중이 감량된다고 한 점은 모두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지방을 연소시키고 근육을 강화 시켜 별도의 다이어트나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선전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2002년 12월 5일 연방거래위원회

캐나다 텔레마케터들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벌금부과

복권에 관심 있는 미국의 고령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소재 텔레마케터들은 최근 자신들의 행위가 미 연방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FTC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이들이 미국민들에게 어떠한 복권이나 주식, 티켓 등을 판매할 것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에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 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1백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할 것에 합의했다.

2000년 12월 FTC와 캐나다 규제당국은 이들이 밴쿠버에 사무소를 두고 미국내 고령자들을 상대로 하던 텔레마케팅 사업을 중지시키고자 했으며,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기만적인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해 가처분 중지와 자산동결을 명했다. 캐나다 규제당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명령을 행했다.

FTC는 NAGG Holdings Ltd., Canada Prepaid Legal Services 및 BSI Premium Bond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한 자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매달 5천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를 되돌려 주도록 했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이 공체라고 부르는 증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현금을 증서나 서류들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텔레마케터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FTC는 이들이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통신판매규칙(the Telemarketing Sales Rule)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혐의자들의 현금지급에 관해 허위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와 권한 없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증권을 발행한 행위는 통신판매규칙에 위반되며, 이는 연방법상의 범죄행위가 된다.

2002년 12월 5일 연방거래위원회

■ 맨하튼 소재 그래픽 회사와 동 소유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 소유주, 37~46개월 징역과 함께 1백 50만 달러 배상 판결 -

맨하튼에 소재한 그래픽 회사인 The Color Wheel, Inc사와 동 소유주인 Haluk K. Ergulec씨는 자신들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이들은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의 Thomas P. Griesa 판사에게 자신들의 4개항의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 따라, Ergulec씨에게는 37내지 4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1백 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독점금지국의 뉴욕 지방사무소는 조사 결과 광고 및 그래픽 서비스 시장에서 Ergulec씨의 입찰담합 및 뇌물공여행위 등을 밝혀냈다. Ergulec과 그의 회사에게는 세 가지 혐의가 인정되었다. 첫째는 현금, 수표 또는 현물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맨하튼 소재 Grey Global Group의 대표에게 1만 달러 정도의 리베이트를 매달 제공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Grey Global Group의 고객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 Ergulec씨는 이 밖에도 또 다른 횡령 혐의가 있다. 한편 그의 회사인 Color Wheel사는 입찰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

Ergulec씨와 그의 회사인 Color

Wheel사는 이미 2002년 5월에도 Grey Global Group의 몇몇 임원들과 같이 기소된 적이 있다. “이번 사건은 광고 및 그래픽 시장에서의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연방법무부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독점금지국장 권한 대행인 R. Hewitt Pate씨는 말했다. 각각의 혐의사실로서 이들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각 위반행위마다 25만 달러의 벌금 및 회사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입찰담합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셔먼법 위반으로 최고 1천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2002년 11월 26일 연방법무부

E U

■ EC조약 제81조·82조의 시행규칙 전면개정

- 역사적인 개혁에 의한 반트러스트 집행의 간소화 및 강화 -

유럽위원회는 1962년 이후에 가장 포괄적인 반트러스트 개혁을 경쟁력이 사회가 채택한 것을 환영하였다.

2000년 9월에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이번의 개혁은 EU 전역에 있어서 EC조약의 반트러스트 규칙의 집행법을 근본적으로 간소화시킨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칙에 의해 유럽위원회에 대한 사업상의 협정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이로써 사업자에게 속한 번거로운 절차나 법적 비용이 없어지게 된다. EU의 역사적인 확대를 앞두고 이번 채택은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경쟁당국간의 집행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정력적 반트러스트 집행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의 개혁에 의해 유럽위원회 및 각국 경쟁당국은 진실로 경쟁에 유해한 가격카르텔과 그 밖의 협정과 싸우는데 대한 자원의 투입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EU 경쟁정책의 집행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EU 경쟁법의 발본적인 개혁으로 대응한 것이다.

금일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반트러스트 규칙의 승인은 이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합병규제 및 국가보조규제의 분야에 있어서 규칙과 절차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리오 몬테 위원은 언급했다. 「이 개혁은 유럽위원회가 EU법 집행의 강화에 명확히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기본이 되는 공동체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각국 집행당국의 광범한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개혁은 경쟁을 제한할 염려가 있는 사업자간의 협정(EC 조약 제81조)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EC조약 제82조)에 관한 EU조약의 규정을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한 1962년 17호 규칙에 정해진 40년래 절차규칙을 현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의 개혁은 EU의 반트러스트 절차에 대한 그간 40년간에 걸쳐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그러나 EC조약 제81조·82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칙은 2004년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

이다. 이 날은 EU가 새롭게 10개의 신규가맹국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트러스트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협정을 유럽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승인시스템으로부터 직접적용이 가능한 적용면제시스템으로의 이행. 이것에 의해 한편으로는 협정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 는 것 또는 협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제81조3항에 합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기업의 책임이 증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게 번거로운 절차나 법적 비용이 소멸하게 된다.
- 제81조3항의 규정을 직접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로써 유럽위원회 각국 경쟁당국 및 각국 법원의 제한적 행위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되는 일체의 경쟁당국은 반트러스트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이번의 17호 규칙의 개혁은 금후 예정된 합병규제규칙의 개혁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병규제규칙에 있어서 정의된 공동체규모를 갖는 합병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합병의 실시에 앞서 유럽위원회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개정의 이론적 근거

현행의 시스템은 가맹국이 6개국만으로, 사업장간의 협정에 관한 반트러스트법령의 적용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경험이 없었던 1962년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조약 제81조3항의 적용면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많은 개별의 결정이 행해졌다. 이 때문에 각국 경쟁당국 및 법원은 제81조3항의 적용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위원회에 의한 개별 적용면제는 지금에 와서는 조약 제81조3항의 통일적 적용을 확보하기에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EU가 10개국의 신규가맹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 신고제도는 이미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비집중화 된 집행은 실제로는 어떻게 가능하는 것일까?

유럽위원회 및 가맹국 경쟁당국은 유럽경쟁네트워크(ECN)라고 일컫는 경쟁당국의 네트워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집행시스템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경쟁당국간의 협력이 촉진되고,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당국이 처리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사안의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조약의 수호자로서 당해 네트워크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일정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거나 명확화 하는 몇 가지의 고시를 내년중에 채택할 예정이다.

2002년 11월 26일 유럽위원회 발표문

미국-EU, 기업결합 조사를 위한 지침 작성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EU위원회는 동일한 기업결합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상호간 협력을 위해 기업결합 작업반을 설치하고 기업결합 조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침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제적으로 대규모의 기업결합이 자주 일어나고 이에 대해 EU와 미국에서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EU위원회는 기업결합의 검토에 있어서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하여 양당국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력을 하며 그 결과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당사자들과 제3자들의 부담을 감경하며, 기업결합 조사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로 했다.

양당국간의 협력은 기업결합 조사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기업결합의 조사에 있어서는 그 검토시점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과 EU 경쟁당국은 결합기업에게 경쟁당국의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는 기업결합이 발표된 이후 적절한 때에 개최하면 될 것이고, 이 때 경쟁당국과 당사자들은 미국과 EU에서의 조사시점을 동일

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소시점, 서류제출 및 기타 정보의 제공시점 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미국과 EU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기 전에 관계당국과 조사시기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EU 당국은 중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추구하며, 전체 조사절차에 걸쳐 자신의 진행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의 공유, 각 조사단계에서의 분석결과에 대한 토의, 경쟁효과의 분석, 효율성, 경쟁제한성, 경제이론 및 동 이론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의 공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구제절차 및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2002년 12월 6일 EU위원회

이는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20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조치이다. 여기서는 중소경쟁자에 비하여 우월한 시장력을 갖는 사업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하여 시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어느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계속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한 방해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마트는 이러한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결국 연방카르텔청은 올해 1월 17일 연방대법원에 관련 문건들과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고등법원의 견해에 반대하여, 경쟁제한방지법 제20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행해져온 “상당성”이라는 기준은 판단을 위한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원가 이하의 설정 판매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경쟁에 상당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금지조치를 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원가 이하의 판매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해 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는 1999년에 이 규정을 법에 추가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2년 11월 12일 연방카르텔청

연방대법원, 원가 이하의 판매는 위법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연방카르텔청이 월마트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출한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연방카르텔청은 2000년 9월 1일에 월마트, 알디(Aldi-Nord)와 리디(Lidl)이 어떠한 생필품에 대해 비용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연방카르텔청,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을 규제

연방카르텔청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일본

토대로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Holtzbrinck사를 통한 베를린 소재 Berliner Verlag사의 활동을 규제하기로 했다. Holtzbrinck사는 Tagesspiegel, Stadtillustrierte Zitty 등을, 그리고 Berliner Verlag사는 Berliner Zeitung, Berliner Kurier, Stadtillustrierte Tip 등을 발간하는 출판사로서, 이들은 베를린 정기구독용 일간지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자 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금지 조치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Holtzbrinck사는 정기구독용 지역 신문을 점유하기 위해 시장베를린 시장에서 우월적인 시장 선도자와 기업 결합을 하고자 했는데, 이 경우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경쟁사인 Axel-Springer-Verlag사의 점유율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우월성으로 인해 Holtzbrinck사는 베를린의 동부와 서부에서 신문을 제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신문광고요금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Holtzbrinck사가 베를린 시장에서 신문 부문에 있어서 두 개의 상이한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시장력을 보다 철저하게 이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와 신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정기구독 신문의 경우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편향하는 등 다른 소비자 보다 그 밀접성이 더 크다. 연방카르텔청의 최종적인 판단은 12월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1월 22일 연방카르텔청

통신·우편규제청, 시내통화시장에서 사전선택제 도입 연기

독일 통신·우편규제청은 시내통화 시장에서의 사전선택제 도입 의무를 오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의결과 그 발효시점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당초 예상했던 2002년 12월 1일부터 시내통화에서의 사전선택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신·우편규제청의 상황인식에 도이체 텔레콤과 그 경쟁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규정한 의무의 연기에 관한 조항이 이번에 적용된 것이다. 통신·우편규제청은 이와 관련 모든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보가 발행되는 12월 18일에 그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월 21일의 제1차 통신법 개정을 통해, 도이체텔레콤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내통화에 있어서 사전선택제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통신·우편규제청의 의견과는 달리, 기술상 및 사업상의 현실을 감안하여 2003년 8월 8일부터 사전선택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2002년 11월 29일 통신·우편규제청

북해도 혼다 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북해도 혼다 판매 주식회사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한 결과, 동 사가 북해도 지역에서 혼다기연공업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제설기 판매에 관해 소매업자가 동일한 가격수준으로 판매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종마다 제조업자 희망소매가격이라는 명목으로 대략 10% 또는 15% 인하한 특별현금가격으로 불리우는, 소매업자가 판매할 때 사용도록 하는 가격을 결정하고 당해 가격을 게재한 공통전단광고를 작성, 소매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소매업자가 당해 특별현금가격 수준에서 판매도록 하였다는 의심스런 행위가 인정되어 10월 18일 동 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2항(재판매가격의 구속)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2년 10월 1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금지법 일부 개정

일본 시적독점금지에관한법률 중 일부가 개정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법 제9조의2) 폐지,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 규제(제

9조)의 정비 및 금융회사의 의결권 보유 제한(제11조)의 대상범위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9조

(1)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금지

이번의 개정에 의해, 규제대상이 '지주회사'에서 '회사'로 변경되고,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외국회사 포함)가 그러한 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제9조 제1항 및 제2항).

어떠한 경우에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조 제3항의 규정 외에도 사업지배력이 집중되는 회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동조의 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일정한 회사의 보고·신고의무

위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의 합계가 지주회사의 경우 6백억 엔, 은행,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지주회사는 제외)의 경우 8조 엔, 그리고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2조 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동조 제5항). 또한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경우 그 회사 및 자회사의 자산액의 합계가 위 기준을 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동조 제6항).

2. 제9조의2

(1)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 제한의 폐지

법 제9조의2는 자본금이 350억 엔 이상 또는 순자산액이 1400억 엔 이상인 회사가 자기자본이나 순자산액 중 많은 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제외). 제9조의2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식보유가 감소되는 움직임으로 일반적 주식보유가 해소되는 경제실태의 변화에 따라 동 조항을 폐지하였다.

3. 제11조

(1)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보유 제한

이번 개정에 의해 규제대상이 금융회사(은행, 보험·증권회사)로부터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한정함과 동시에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의한 금융관련회사의 의결권 보유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비금융관련회사의 의결권을 그 총주주 의결권의 5%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보험회사의 경우는 10%).

(2) 적용제외 및 인가규정

위의 의결권 보유 제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으며(법 제11조 제1항), 동조 제1항 각호에 동조의 적용제외가 되는 의결권 보유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 의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적용제외 의결권에 대해, ① 주식 발행 회사가 이익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의결권 보유비율이 증가했을 경우(2호), ② 신탁재산으로써 의결권을 취득 또는 보유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의결권의 행사나 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3호),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비업무집행조합원), 조합재산으로서 의결권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5호), ④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활동을 구속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경우(6호)가 추가되었다. 또한 ① 대물변제 또는 담보권의 행사에 의해 의결권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1호), ② 주식발행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의결권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2호), ③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 또는 지시할 수 없는 경우(3호의 일부), ④ 주식발행회사의 사업활동을 구속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6호), 5%를 초과하여 의결권 보유를 1년 이상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제11조 제2항).

(3) 제10조 제2항과의 관계

이번 개정에 의해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의한 금융관련 회사의 의결권 보유, 증권회사에 의한 의결권 보유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제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소유 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된다.

2002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격표시지침 일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0월 18일 최근 가격표시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했는데, 모두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의 일부를 수정한 다음, 가격표시지침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지침을 충분히 주지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는 표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2002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노르웨이

노르웨이 경쟁당국, 회원국간 공조 필요성 강조

노르웨이 경쟁청(The Norwegian Competition Authority)은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카르텔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독일회사인 Degussa/SKW Trostberg와 노르웨이 회사인 Odda Smelteverk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두 회사가 일부 화학물 시장에서 위법적인 가격고정과 시장분할을 한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카르텔 가능성과 이에 대한 경쟁당국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노르웨이 경쟁당국 수장인 Knut Eggum Johansen씨는 말했다.

통상 내부적인 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의 협력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및 덴마크와 가능한 한 기밀에 속하는 정보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경쟁법이 2004년에 보다 현대화되도록 개정을 하는 경우 그 집행이 분산화되면, EU 회원국내의 모든 경쟁당국들은 상호간 정보교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002년 12월 2일 노르웨이 경쟁당국

스웨덴

스웨덴 경쟁당국에 신임 장관 임명

스웨덴 정부는 Claes Norgren(48세)을 스웨덴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y)의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했다. Claes Norgren 신임장관은 1987년에서 1990년에는 국채사무국의 책임자를 지내다가 1990년에서 1993년에는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까지는 스웨덴 재무감독부를 책임지고 있었다.

2002년 12월 10일 스웨덴 경쟁당국